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협력회사 행동규범

목 차

제 1 장 총칙	2
제 2 장 윤리 경영	3
제 3 장 인권 및 노동.....	4
제 4 장 환경	5
제 5 장 안전·보건	7
제 6 장 품질 및 공급망 관리	9
제 7 장 정보보호	10
제 8 장 행동규범 운영 및 관리	11

첨부

첨부 1: 개인정보보호 서약

첨부 2 : 정보보안 서약

첨부 3 : EHS 준수 확인서

첨부 4 : 협력사 Audit Checklist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본 행동규범은 아이디에스(이하 "IDS")와 거래하는 협력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, 인권, 노동, 환경, 안전·보건, 품질, 정보보호 및 공급망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- ① 본 행동규범은 IDS 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적용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임직원 및 하위 협력회사에 공유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협력회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행동규범과 관련 법령의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.

제 3 조(협력회사의 책임)

-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협력회사는 IDS 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동규범 준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4 조(준수 의무)

-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, 관련 법령 및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IDS 는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 제한,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2 장 윤리경영

제 5 조(법규 준수 및 윤리경영)

-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협력회사는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 6 조(반부패 및 공정거래)

- ① 협력회사는 금품, 향응, 편의 제공,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협력회사는 가격담합, 입찰담합, 시장분할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협력회사는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,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IDS 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협력회사는 IDS 및 고객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7 조(윤리제보)

- ① 협력회사는 윤리 및 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윤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IDS 는 협력회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력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인권 및 노동

제 8 조(인권 존중)

- ① 협력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근로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차별 및 괴롭힘 금지)

- ① 협력회사는 채용, 승진, 보상 및 교육 등 모든 고용과정에서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, 종교, 장애 또는 기타 법령에서 보호하는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협력회사는 폭언, 폭행,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0 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- ① 협력회사는 강제노동, 인신매매, 채무노동 및 기타 비자발적인 노동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협력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연소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1 조(근로조건)

- ① 협력회사는 근로시간, 휴게시간, 휴일,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결사의 자유 및 고충처리)

- ① 협력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여야 하며,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 13 조(근로자 보호)

- ①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국적, 고용형태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4 장 환경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14 조(환경경영)

- ① 협력회사는 환경 관련 법령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영향 최소화
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환경보호를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하고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
여야 한다.

제 15 조(환경법규 준수)

- ①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·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
한다.
- ②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
를 실시하고 IDS 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환경영향 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
다.
- ② 협력회사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17 조(화학물질 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화학물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고객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유해물질을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5 장 안전·보건

제 18 조(안전보건)

- ① 협력회사는 안전·보건을 경영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관련 법령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위험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③ 고위험 작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, 작업조건 변경 등 추가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작업환경 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기계·설비를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협력회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정리정돈, 환기, 조명 및 안전표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협력회사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21 조(안전교육 및 건강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22 조(비상대응 및 사고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, 중대한 사고는 IDS 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협력회사 안전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작업에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작업 전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안전문화)

-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근로자는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6 장 품질 및 공급망 관리

제 25 조(품질경영)

-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, 계약조건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품질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제품의 설계, 구매, 제조, 검사, 운송 및 설치 전 과정에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제품, 공정 또는 원자재 등의 변경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③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제품 안전 및 규제 준수)

- ① 협력회사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필요한 인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품의 안전 또는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IDS 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제 28 조(공급망 관리)

-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취지를 하위 협력회사와 공유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공급업체 선정 및 운영 시 품질, 안전·보건, 환경, 윤리 등 공급망 위험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 29 조(책임 있는 구매)

- ① 협력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자재 및 부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구매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30 조(위조품 방지)

- ① 협력회사는 위조품, 비정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위조품 또는 부적합 자재가 확인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정보보호

제 31 조(정보보호)

- ① 협력회사는 IDS 및 고객의 정보자산을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② 협력회사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32 조(기밀정보 및 지식재산 보호)

- ① 협력회사는 IDS 및 고객의 영업비밀, 기밀정보 및 지식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사전 승인 없이 기밀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

제 33 조(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호)

- ① 협력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·이용·보관 및 파기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정보유출 및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 34 조(정보보안 사고 대응)

- ① 협력회사는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IDS 또는 고객의 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IDS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협력회사는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 35 조(정보보호 준수)

- ① 협력회사는 IDS의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② IDS 는 정보보호 수준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 또는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력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8 장 행동규범 운영 및 관리

제 36 조(행동규범 운영)

-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본 행동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7 조(평가 및 개선)

- ① IDS 는 협력회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,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협력회사는 평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IDS 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38 조(행동규범 위반)

-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IDS 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IDS 는 행동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, 거래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 	사	문서번호	IDS/SHYT-SP-GA11-C
		제/개정일자	2026.06.01
	협력회사 행동규범	개정번호	0
		페이지	13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본 행동규범은 2026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개정)

본 행동규범은 관련 법령, 국제기준 및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.